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글로벌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협력 전략 고도화 연구용역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10.

담당부서		전화번호	email
부서명	지역혁신사업처	055-751-0000	
관리자	지역혁신사업처	055-751-9903	kjhyou@kosmes.or.kr
담당자	지역혁신사업처	055-751-9905	jun3030@kosmes.or.kr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과업 내용 ····· 2

Ⅲ. 과업 수행지침 ····· 6

Ⅳ. 계약·낙찰자 선정 방법 ····· 9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11

Ⅵ. 제안서 작성방법 ····· 14

Ⅶ. 기타사항 ····· 17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글로벌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협력 전략 고도화 연구용역

나. 사업금액: 금99,84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금)까지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실증특례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실증, 인증, 허가, 신산업 보험 등을 지원 중

- 글로벌 주요 인증기관의 해외인증, 혁신클러스터와 현지실증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규제완화·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추진·지원

3. 주요 과업 내용

○ 신규 지정 3차 글로벌특구 중심의 특구별 산업 및 사업화 현황 조사 및 글로벌 진출 여건 분석

* 특구별 지정 분야에 따른 핵심 실증사업 및 특화 산업 등 주요 기업 현황 분석
** 해외 인증·규격 및 인허가 대응의 시급성·중요성을 기준으로 우선 지원 분야 선정

○ 신규 지정 3차 글로벌특구(3곳)를 포함한 글로벌 실증·인증 협력망 고도화를 위해 특구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충 및 협력 생태계 확장

* 해외 주요 인증 기관, 실증 기관, 대학, 협회, 정부부처 등 관련 네트워크 발굴·매칭

○ 신기술·신산업의 신속한 규제개선 추진, 사업화 연계지원 체계 구축 등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해외협력 가이던스 제공 및 정책 제언

* 특구사업자의 해외실증·인증 추진 편의성·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이던스 제작·배포
** 실증·인증 후 사업화 추진 관련, 해외 현지 지원정책, 판로개척 등 글로벌 사업화 방안 제시

Ⅱ 과업 내용

1. 3차 특구(3곳) 사업 및 사업화 현황 및 글로벌 진출 여건 분석

□ 신규 지정된 **3차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중심으로 특구별 산업, 주요 실증사업, 참여기업 및 사업화 추진현황 등을 조사·분석**

○ 특구별 지정 분야, 핵심 기술·제품, 주요 실증사업 및 수혜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단계와 국내외 실증·인증 및 해외 진출 추진현황 분석

○ 목표시장, 해외협력 수요, 관련 규제·표준·인증 및 인허가 등 글로벌 진출 여건을 조사하고,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구별 주요 지원 분야 도출

○ 해외 실증·인증 및 시장진출 관련 수요와 애로사항, 해외협력 희망 분야·지역·기관 및 필요한 지원사항을 확인하여 해외기관 조사와 글로벌 진출 지원방안 마련 등에 활용

○ 특구별 사업 추진체계,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구조,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함께 검토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성과와 향후 사업화·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약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구별 지원방향 및 후속 과제를 제시

<참고> 3차 글로벌 혁신특구 현황 (3곳, '26.6월 지정)

구분	주제	주요 내용
경북 (포항)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전기추진선박 전환 실증을 통한 차세대 해양산업 선도
경북 (칠곡)	수요특화 모듈형 LSV	모듈 구조의 플랫폼 기반 개방형 모빌리티 글로벌 산업화 추진
전남	신재생 BSS 기반 소형 CAV	신재생 가상발전소 연계형 교환형 배터리 적용 전동 소형 농기계 및 삼륜형 CAV 규제 해소로 신시장 진출

2. 해외 실증 · 인증 협력 네트워크 조사 및 제안

□ 3차 글로벌 혁신특구의 **산업·기술 특성과 참여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해외 협력기관 및 관련 네트워크 조사**

○ 해외 실증기관, 시험·검사·인증기관, 표준기관, 대학·연구기관, 산업협회, 정부·공공기관 및 현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주요 기능과 전문 분야 조사

○ 특구별 핵심 기술·제품과 해외기관의 전문성 및 지원기능을 비교하여 해외 실증·시험·인증, 기술협력 및 현지 사업화 등의 연계 가능성 검토

□ 전년도 사업을 통해 발굴한 해외기관 및 **기존 협력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3차 특구 접목 가능 기관을 추가로 조사·발굴**

○ 기존 네트워크와 신규 후보기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구별 협력 가능 기관과 연계방안을 제안

* 대학·연구기관, 표준·인증·시험·검사기관, 정부·공공기관, 산업협회·클러스터 등

□ 기관의 전문성, 기술·산업 적합성, 협력 가능성, 현지 여건 및 출장 동선 등을 고려하여 조사·방문 대상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국가·지역과 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결정

○ 해외기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구 및 참여기업과의 협력 가능 분야와 향후 연계방안 제안

○ 기관별 주요 기능과 협력 가능사항을 정리하고, 해외 실증·인증, 기술교류, 공동연구 및 현지 사업화 등 특구별 수요에 적합한 협력 방향 제시

○ 기관의 회신 여부와 협력 의향, 과업기간 및 현지 여건 등에 따라 조사·협력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

3. 신규 3차특구(3곳)의 산업 특성에 맞춘 해외[인증]네트워크 제안

□ 신규 지정 **3차 특구**(경북 포항, 경북 칠곡, 전남)에 대한 **해외 네트워크** (인증, 실증 등) **조사 후 제안**

○ 해외기관 조사·발굴 및 사전 접촉 업무는 수행기관의 현지출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기관 접촉, 협력 의사 확인 및 일정 조율 등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

○ 조사·방문 대상 기관은 3차 특구의 산업·기술 분야 및 참여기업의 해외 실증·인증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구체적인 기관 및 방문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해외기관 방문 및 협력활동은 기존 네트워크 조사 결과와 사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출장 과정에서 확인된 협력 가능 사항 및 후속 검토 필요사항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공유

□ **3차 특구 3곳과 관련한 해외 네트워크와 협력을 위해** 분야별 거점 기관을 방문하여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해외 출장 진행)

○ 해외 실증 및 인증 기관, 대학, 협회, 정부부처 등 관련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간담회 개최 등 해외기관과의 협력활동 수행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등의 원활한 해외협력을 위한 출장 필요

* 출장단 인원(8인 기준)의 항공료, 숙박·식대·교통비 등 체제비용, 통역비용, 차량임차 등 50백만원(1회 기준)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 입찰 요망

<참고> 지역별 해외네트워크 예시 (지역은 예시이며, 추후 협의 후 결정)

① **아시아·중동** : 싱가포르 (해양클러스터, 바이오폴리스) + 사우디(네옴시티 등)
② **유럽** :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체코,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인증·실증기관 중
③ **미주** : 미국 메사추세츠주 랩센트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생명과학 클러스터, 뉴욕 바이오헬스 캐피탈 Region 등

4. 해외협력 분야 개선방안 정책제안

□ 정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특구 주관기관, 수혜기업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글로벌 혁신특구의 **해외 실증·인증과 사업화 지원 관련 개선사항 도출**

○ 해외 실증·인증 및 인허가 추진, 해외기관 발굴·섭외와 협력 등 해외 진출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과 제도·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분석

○ 해외 실증·인증 이후 현지 사업화,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로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특구기업 지원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 제시

□ 전년도 사업에서 제시된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참고하되, **신규 3차 특구의 현황과 수요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제시**

○ 전년도 정책제안 가운데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3차 특구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선별하고, 금년도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애로사항과 개선 수요 반영

○ 특구 현황조사, 통합 간담회, 해외기관 협력 및 국외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한 장·단기 정책방안 제안

□ 과업결과 종합 및 활용방안 제시

○ 특구 현황과 기업 수요, 해외기관 조사, 국외 현지조사, 가이던스 및 정책제안 등 과업 수행결과를 최종보고서에 종합하여 제시

○ 본 과업에서 제시한 세부 조사범위와 수행방법은 제안내용, 과업 추진상황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결과를 특구별로 정리하여 주요 시사점과 향후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특구 기업의 해외 실증·인증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진공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범위·기간 등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하며 중진공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PM)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중진공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근거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①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③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주고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청렴계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진공은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진공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2. 과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추진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구 분	보고명(형식)	보고시기 및 제출자료	주요내용
정기 보고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 후 결정) ○ 제출자료 : 과업 추진계획서 (보안대책 포함)	○ 과업 추진 계획 보고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의 후 결정)	○ 진행사항 보고 ○ 특이사항 공유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이내 (협의 후 결정)	○ 완료계, 결과물 등 제출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이슈사항	○ 즉시	○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기타	○ 사안에 따라 협의	○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 기타사항

○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이 제출된 산출물 검수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3.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자료, 산출물 등)를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제3자에게 제공·양도·대여) 해서는 안 되며, 계약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종료 시 중진공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중간 산출물은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하여야 함

4. 지식재산권

○ 본 용역 수행 결과물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로서, 향후 중진공의 사업 운영, 제도 개선, 유지관리, 후속 사업 추진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성 및 활용성 확보와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으로 특정)은 중진공에 단독으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중진공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콘텐츠(폰트, 이미지 등)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용역 대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함

Ⅳ 계약·낙찰자 선정 방법

1.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2.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판로계약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 가능함 (증빙자료 필수 제출)

* 비영리법인이나 허가증 제출이 어려울 경우, 소명자료(공문 등) 제출 필요

4. 공동계약

○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5. 하도급계약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본 용역은 종합적인 기획·관리가 필요하여 과업수행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므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비중으로 진행

구 분	평가방식	배 점	비 고
기술평가	정량평가 : 제안사 경영상태	10점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평가 : 제안서 평가	8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10점	-
합 계		**100점**	-

○ 기술능력평가(90%)

- 정성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2. 평가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지(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평가)

○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

3.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이외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함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

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에게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대체함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서 내용 중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과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실행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표지포함, 별도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자료는 중진공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하지 못하며,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과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제안서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확인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진공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질의사항은 답변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 관계법령 및 중진공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5. 문의처

○ 문의사항은 원칙적으로 E-mail을 통한 질의로 진행

- (과업제안 관련) 지역혁신사업처 박준용 과장
 (T. 055-751-9905, jun3030@kosmes.or.kr)
- (입찰절차 관련) 경영지원실 이영은
 (T. 055-751-9320, eun3098@kosmes.or.kr)

Ⅶ 기타사항

□ 첨부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첨부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첨부2-1]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서식)	과업추진 조직도 및 추진일정
(별지 제3호서식)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4호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5호서식)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별지 제6호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별지 제7-1호서식)	(해당 시)중진공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9호서식)	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 제안배경 및 목표 ◦ 제안 범위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연혁, 주요업무, 자산, 연간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 제안사의 글로벌 조직망 및 협력 네트워크 제시
Ⅲ. 사업내용부문	
1. 사업수행 전략	◦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과업 및 제안요청 이해도) ◦ 사업추진 방법론 ◦ 제안사가 보유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세부 추진계획	◦ 신규 지정 3차 글로벌특구 중심의 특구별 산업 및 사업화 현황 조사 및 글로벌 진출 여건 분석 ◦ 신규 지정 3차 글로벌특구(3곳)를 포함한 글로벌 실증·인증 협력망 고도화를 위해 특구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충 및 협력 생태계 확장 ◦ 신기술·신산업의 신속한 규제개선 추진, 사업화 연계지원 체계 구축 등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해외협력 가이던스 제공 및 정책 제언 ◦ 과업결과 종합 및 활용방안 제시
3. 투입인력 전문성	◦ 투입인력현황 -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원명단 - 투입인력별 본 과업 적정성 및 전문성 보유 여부 기재 - 투입인원 인적사항 및 담당업무 분장 제시
Ⅳ. 사업 관리	
1.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 (착수보고, 주간·월간·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기타 관리방안	사업수행 관련 문서 등 보안관리 방안 제시

[첨부2]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 가 항 목	배점	배점구간					득점
1. 경영상태(정량)	**10**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참고1]	10	10	9.5	9	7		
2. 과업수행능력(정성)	**30**	-					
- 제안사의 과업 수행 능력	10	10	9	8	7	6	
- 과업수행 인력 구성의 적절성	10	10	9	8	7	6	
- 과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10	10	9	8	7	6	
3. 과업계획(정성)	**30**	-					
- 추진일정 및 계획의 체계성	10	10	9	8	7	6	
- 과업 이해도 및 추진 방안의 부합성	10	10	9	8	7	6	
- 과업달성 방안의 구체성	10	10	9	8	7	6	
4. 과업수행 및 관리(정성)	**20**	-					
- 과업수행 관리의 체계성	10	10	9	8	7	6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10	10	9	8	7	6	
합 계	90	-					

***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첨부2-1]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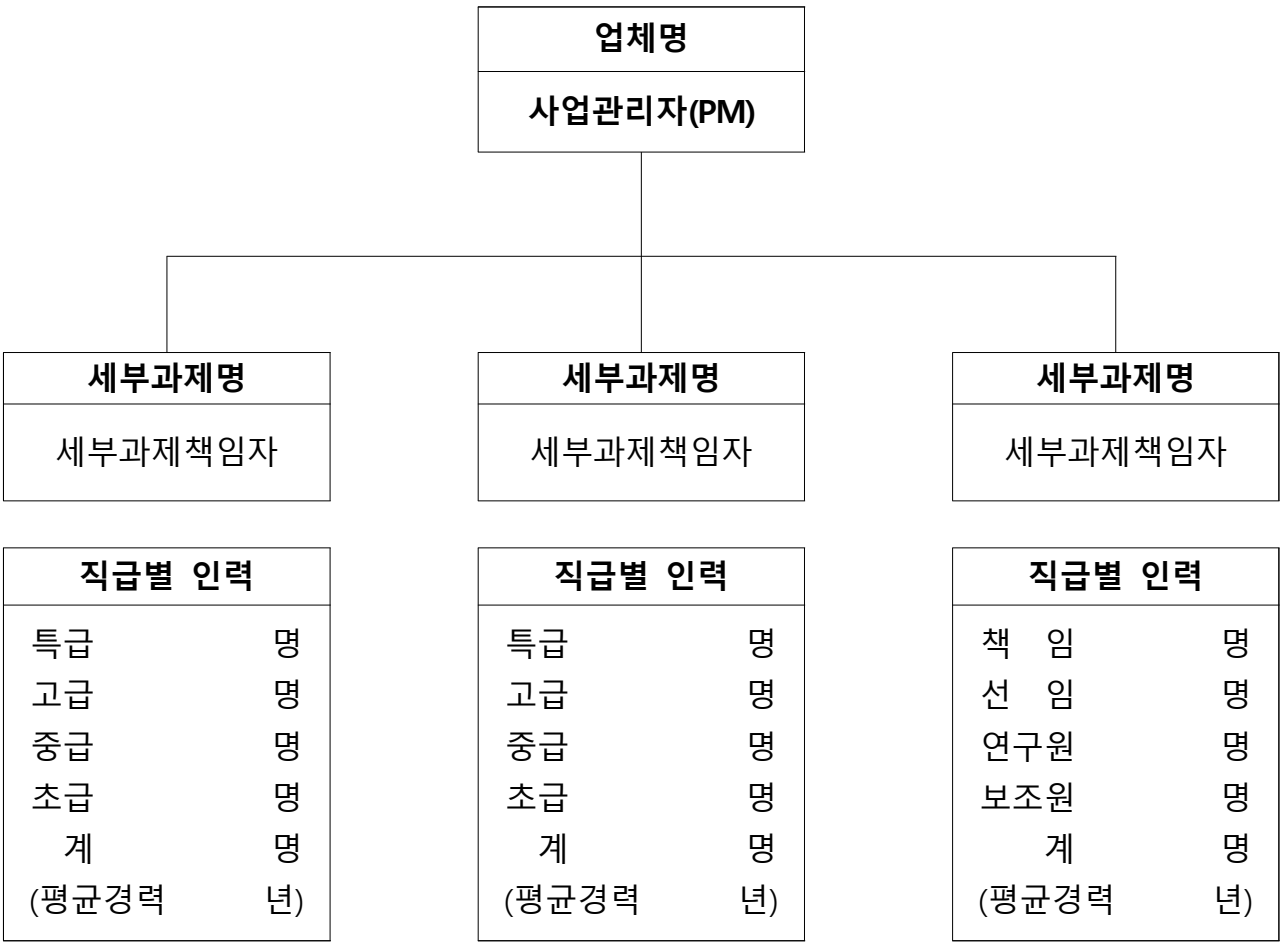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상시근로자 수**	명
본 사 소 재 지			
주 요 사 업 분 야			
해당 분야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자 본 금 (' 2 5 년)	백만원	**매출액 ('25년)**	백만원

주요연혁

[별지2호]

과업추진 조직도 및 추진일정

□ 조직도



□ 추진일정

구분	20XX년				
	M 월	M+1 월	M+2 월	M+3 월	...
▪					
-					
-					
-					
-					

[별지3호]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	직위	연령	담당업무	주요경력사항	경력년수	비고
사업 책임						O년 O개월	
OO 과제 책임							
OO 과제 책임							
OO 과제 책임							
기타							

주) 1. 실제로 과업에 투입될 인력만 작성(외주업체 포함, 비고란 작성)
2. 작성기준일자는 제안일 현재로 함
3. 용역 수행자로 제출한 모든 인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별지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학교명 기재 안함)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경 력 사 항					

기간	참여 용역명	담당업무 및 역할	참여당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용역비
			소속회사	직위		

주) 1. 작성기준일 : 제안요청서 발송 기준일 현재
2. 계약체결업체에 한하여 참여자의 소속업체를 증빙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및 최종 학교(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5호]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단 계	수행업무	참여율	경력	인원계 (M/M)	M1	M2	M...	비고
계(M/M)								

[별지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글로벌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협력 전략 고도화 연구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7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글로벌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협력 전략 고도화 연구용역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별지7-1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글로벌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 협력 전략 고도화 연구용역"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업체명	계약담당자	○○○ (서명)
		계약담당자	○○○ (서명)
		자문(고문)위원	○○○ (서명)
	업체명	대표(이사)	○○○ (서명)

[별지8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_ 년 __ 월 __ 일부로 글로벌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협력 전략 고도화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0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관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_년 __월 __일부로 글로벌 진출 기반조성 및 해외협력 전략 고도화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전에 기밀로 지정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본인이 본 사업에서 이탈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 . .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하여야 함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